

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자치행정과)

의안번호	제 300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4. 5. 23.)
의 안 명	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변경이유

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
- 설치목적 :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
- 설치연도 : 2023. 7. 13.
- 기금의 용도
 -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 - 지역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 -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 -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나.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개요

- 운용계획 변경 사유 :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(증 37,848원)

○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이 당초 목표모금액 12,000천원보다 37,848천원 증액모금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감액
기금규모(수입·지출)	32,381천원	70,229천원	37,848천원

2)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자금수지 총괄

(단위 : 천원)

2024년 수입계획				2024년 지출계획			
항 목	당초 수입액	변경 수입액	증 감	항 목	당초 지출액	변경 지출액	증 감
합 계	32,381	70,229	37,848	합 계	32,381	70,229	37,848
전입금	-	-	-	비용자성사업비	-	-	-
보조금	-	-	-	융자성사업비	-	-	-
차입금	-	-	-	인력운영비	-	-	-
융자금회수 (이자 포함)	-	-	-	기본경비	-	-	-
예탁금 원금회수	-	-	-	예탁금	-	-	-
예치금회수	12,064	49,912	37,848	예치금	32,381	70,229	37,848
예수금	-	-	-	차입금원리금 상환	-	-	-
이자수입	317	317	-	예수금원리금 상환	-	-	-
기타수입	20,000	20,000	-	기타지출	-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및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2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- 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- 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(고향사랑기금)

4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,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으로,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¹⁾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, 202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당초계획 지출액 3,238만원보다 116.9%인 3,784만원이 증액된 7,022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
○ 성북구 고향사랑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²⁾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, 기금의 재원은 「고향사랑 기부금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

제30조(고향사랑기금)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이 조에서 “고향사랑 기부금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3)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이며, 기금의 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,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,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임.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-
1.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 2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 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 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 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- 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일부를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3.7.13.]

- 3) 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)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·접수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·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.
1.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·독려한 경우
 2.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